

의안번호	제283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07 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2월 2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3
------------	-----

제출연월일 : 2012년 2월 2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3782(2011. 10.28)호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기 상위 법령에 맞추어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의 추가위촉 민간위원 참여 확대 (안 제2조)
- 심사기준 신설 (안 제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는”을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9인”을 “11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2조제1항제2호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5인”을 “7명”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2항 중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한다”를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제5조를 제5조, 제6조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9조부터 제11조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1명-----</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추천한자 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p>제3조(기능)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p>

<p>6.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회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p><신설></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③(생략)</p>	<p>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②(생략)</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③(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 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p>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생략) ②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8조(수당 등) (생략)</p>	<p>제9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p>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생략)</p>	<p>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생략)</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

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
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

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 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⑤ 제4항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전문개정 2009.2.3]